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542
------	------

2014. 2. 26.
재정경제위원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년 9월 26일, 박운기·임형균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9월 27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】

-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(2014.2.26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수정안 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박운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농수산물 거래 안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‘시장관리운영위원회’의 구성 및 기능·역할을 정비하고,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

서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중지를 조치토록 하는 등 농수산물도매 시장의 효율적 운영·관리와 가격 안정을 도모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장예외품목 지정 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(안 제47조제1항).
-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부정행위 등을 중지 조치하도록 함(안 제51조제2항 신설).
-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을 확대함(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남중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정산창구 운영, 도매시장 인접지역에서의 부정행위 중지 등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상장예외품목의 지정(안 제47조제1항)

- 안 제47조제1항은 거래 투명성 확보와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)이 상장예외

품목을 지정할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음.

- 현재 시장개설자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및 시행규칙¹⁾에 따라 시장개설자(시장)는 거래량이 소량이거나 거래 참여자가 부족한 경우, 상장거래에 의해 매입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가락시장의 경우 청과부류 167개 가운데 고구마, 마늘을 비롯한 115개 품목, 수산부류 163개 가운데 60개 품목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며, 가락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약 10%를 차지하고 있음(참고자료 1).
- 상장예외품목은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, 품목 특성으로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, 기타 상장거래로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위장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관행을 막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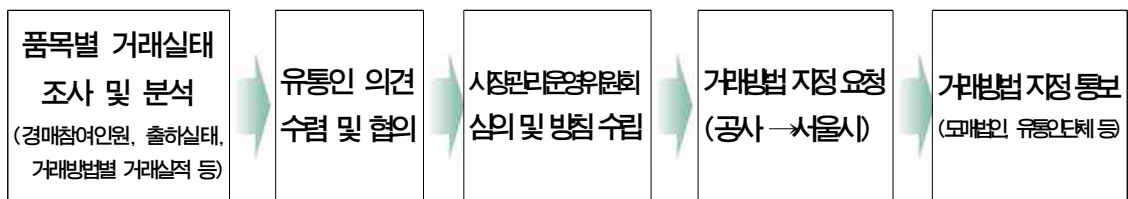
1) 제27조(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)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.

1.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
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
2.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
3.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
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

위해 운영 중인 예외적인 거래방식임.

- 상장애외품목 지정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비롯한 각 유통인의 이해관계가 상이해 거래실적 조사와 유통인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고 있음.

〈그림〉 상장애외품목 지정절차



- 유통인 대표를 포함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상장애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품목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관련 법령에서는 상장애외품목의 지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.

다. 정산창구의 운영과 관리(안 제55조제3항)

- 안 제55조제3항은 정산창구가 서울시(이하 “시”)와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(이하 “공사”)의 간섭에서 떠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및 공사 퇴직자의 취업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.

- 출하대금 정산창구는 상장애외품목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유통구조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,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12월 시장도매인도입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정산조직 설립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음.
- 현재 공사와 비상장품목정산조합은 각각 50%씩 출자를 통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정산회사 설립을 결정하였고, 특히,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산조직 설립초기의 자금운영 원활화를 위해 100억원의 정산자금을 공사를 통해 용자·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.
- 시와 공사 퇴직자들의 정산조직 취업을 일정기간 유예하고자 하는 조치는 정산창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일 수 있음.
- 다만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을 4급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의 기관장 및 상임이사들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고, 퇴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.

라.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(안 제68조)

- 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며,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, 각종 수수료, 거래방법을 비롯한 도매시장

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고 있음.

- 안 제68조제2항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.
- 유통인 대표, 생산자 및 구매자 대표,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 바, 이는 도매시장과 관련한 사실상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다만, 법에서 위원회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가 각각 5명의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할 경우 소속이나 거래품목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한 유통인들과 생산자, 구매자 대표 등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추천인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(참고자료 2).
- 아울러, 위원회의 심의 사항 가운데 정산창구의 운영과 관리 방식에 관한 사항은 정산창구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므로 운영의 주요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대신 시장은 대금정산의 안정성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마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정산창구 운영방안 개선, 시장관리운영위원회

구성과 운영 사항 구체화 등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- 상장예외품목 지정 제도의 개선이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는 조치 등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도매시장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다만,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추천인 규모나 역할 등에서 관련 법령이나 현재 운영방식과 조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4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4년 2월 26일
제안자 : 재정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권한을 관련법령과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상장애외품목 지정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(안 제47조제1항).
- 나. 정산창구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55조제3항).
- 라.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정비해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함(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).
- 리.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위임받은 공사 사장에 대한 도매시장 시설의 관리와 환경 유지 책임 규정을 삭제함(안 제78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7조제1항 중 “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”를 “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로 한다.

안 제55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.

안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,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(본부장 등)
 2.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인의 대표, 하역단체 대표 등 유통인 대표 8명 이내
 3.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
 4.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,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
 5.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.

1.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
2. 수수료, 사용료,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
3.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
4.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
5. 정가·수의매매 거래,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
6.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
7. 상장애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

안 제78조제1항 중 “공사사장, 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,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” 를 “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,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” 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47조(상장예외품목 지정)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(이하 "상장예외품목"이라 한다)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<u>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</u>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7조(상장예외품목 지정)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(이하 "상장예외품목"이라 한다)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<u>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5조(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정산창구의 형식, 운영 및 관리방법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u>다만, 정산창구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및 공사 퇴직자는 정산창구의 취업을 3년간 유예한다.</u></p>	<p>제55조(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정산창구의 형식, 운영 및 관리방법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단서 삭제></p>
<p>제68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u>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도매시장법인·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인의 대표</u> 2. <u>생산자 및 구매자단체 대표</u> 3. <u>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5명</u> 4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5명</u> 5.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</p>	<p>제68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) ① <개정안과 같음></p> <p>② <개정안과 같음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,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(본부장 등)</u> 2. <u>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인의 대표, 하역단체 대표 등 유통인 대표 8명 이내</u> 3. <u>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</u> 4. <u>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,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</u> 5. <개정안과 같음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</p>

<p>한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상장애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정산창구의 형식, 운영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도매시장의 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한다.</p> <p>1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 <삭제></p> <p>9. <삭제></p> <p>8.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8조(관리책임) ① <u>공사사장, 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,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·개선할 책임을 진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8조(관리책임) ① <u>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,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유지·개선할 책임을 진다.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” 를 “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”로 한다.

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1.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, 공사 유통관리업무 총괄 부서장(본부장 등)
 2.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인의 대표, 하역단체 대표 등 유통인 대표 8명 이내
 3. 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
 4.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,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

5명 이내

5.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
2. 수수료, 사용료,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
3.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
4.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
5. 정가·수의매매 거래,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
6.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
7.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

제68조제3항부터 제4항을 제4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, 제4항(개정되는 제5항)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”로, “시장이”를 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47조(상장예외품목 지정)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(이하 "상장예외품목"이라 한다)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<u>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7조(상장예외품목 지정)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(이하 "상장예외품목"이라 한다)은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<u>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매시장별로 따로 지정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1조(부정거래에 대한 조치)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 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51조(부정거래에 대한 조치) ①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거래참여자간의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 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시장은 도매시장 관리구역 인접 지역에서 부정행위 등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형성에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8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68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) ① <u><현행과 같음>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, 공사 유통 관리업무 총괄 부서장(본부장 등)</u> 2. <u>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인의 대표, 하역단체 대표 등 유통인 대표 8명 이내</u> 3. <u>생산자 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등 5명 이내</u> 4. <u>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,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5명 이내</u> 5. <u>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

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.